

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제정 2006. 5. 8.
최종개정 2020. 8.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예술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6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

제2조(수행과정) ①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한 수행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9., 2012.3.2., 2015.7.18., 2018.11.12., 2019.1.29., 2020.8.28.>

1. 해외어학연수
2. 국외전공연수
3. 국내현장실습(단기, 장기)
4. 학교기업현장실습
5. 글로벌현장실습(단기, 장기)
6. 사회봉사
7. 국내전공연수
8. 전문대졸이상정원외특별전형입학자 교양이수학점 인정
9.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의 전적대학 졸업(수료)학점 인정
10. 컬처허브 프로그램의 학점인정
11.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② 현장실습, 전공연수, 계절수업은 서로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09.6.11.>

제3조(기간) 정규학기 또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제4조(자격) 신청자격은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제2조의 과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7.>

제6조(담당부서) 학점인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별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11.12.9., 2012.3.2., 2015.7.18., 2015.12.7., 2018.11.12., 2019.1.29., 2020.8.28.>

1. 해외어학연수 : 국제교류원
2. 국외전공연수 : 국제교류원
3. 국내현장실습(단기, 장기) : 산학협력처
4. 학교기업현장실습 : 산학협력단
5. 글로벌현장실습(단기, 장기) : 국제교류원

6. 사회봉사 : 입학학생처
7. 국내전공연수 : 교무처
8. 전문대졸이상정원외특별전형 입학자 교양학점인정 : 교무처
9.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 전적대학 졸업(수료)학점 인정 : 교무처
10. 컬처허브 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11.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 교무처

제7조(학점인정 신청) 본 세칙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수행 종료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는 매 학기 접수한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 ③ 전문대졸이상정원외특별전형입학자의 전적대학 교양 이수학점의 인정 또는 전적대학 졸업(수료)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년도 입학시 소정기간에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 <개정 2015.7.18.>

제8조(학점인정 심사 및 평가) ① 교무처는 매 학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학점인정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② 학점인정에 대한 심의 및 평가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3.2., 2013.9.21., 2015.7.18., 2015.12.7., 2018.7.10., 2018.11.12., 2019.1.29., 2020.8.28.>

1. 해외어학연수 : 한 학기 1학점,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한다.
2. 단기 국내외 전공연수 및 컬처허브 프로그램 및 단기 글로벌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1~3학점,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하고, 단기 국내 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1~3학점, 졸업 시 까지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
3. 학교기업현장실습 : 한 학기 1~5학점, 최대 졸업학점의 1/4이내로 인정한다.
4. 장기 글로벌현장실습 및 장기 국내현장실습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글로벌현장실습은 교양 2학점 및 전공선택 교과로 최대 16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국내현장실습은 전공선택 교과로 최대 18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5. 사회봉사 : 한 학기 1학점,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6.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 재학기간 중 최대 인정학점은 전문학사과정 3학점, 학사과정 1학점 및 학기별 1과목 이내로 인정한다. 단, 졸업유보자는 제외한다.

③ 학점인정에 필요한 수행시간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국고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정기준에 따라 30시간미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2018.11.12., 2020.4.29.>

④ 교과목의 교과목 이수 인정구분은 학점인정 과정 운영형태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인정한다. <개정 2015.12.7., 2018.11.12., 2019.1.29., 2020.8.28.>

1. 해외어학연수, 사회봉사 : 교양선택
2. 국내현장실습(단기, 장기) : 전공선택
3. 국내·외 전공연수, 컬처허브 프로그램 : 전공선택
4. 글로벌현장실습 :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5.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 전문학사과정 교양선택, 학사과정 학부공통선택

⑤ 전문대졸이상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의 전적대학 교양교과목의 학점 인정은 이수성적의 등급이 B등급(80점)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되, 언어영역 2학점, 예술교양영역 2학점, 일반교양영역 4학점의 범위 내에서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이수성적이 Pass인 교과목은 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7., 2017.2.12., 2019.1.29.>

⑥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의 전적대학 졸업(수료)학점은 최대 120학점 이하로 인정한다. <개정 2015.12.7.>

제9조(학점인정) 비정규 과정의 학점인정은 전문학사과정은 28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15학점 이내로 하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8.11.12., 2019.1.29.>

제10조(학점인정취소) 학점인정을 받은 자의 학점인정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받은 학점은 즉시 직권 취소한다.

제11조(운영내규) 각 과정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교외연수및현장실습등의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제정 2004.6.1.>」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 공포(2009.01.30.)에 의한 ‘학교의 장 명칭 자율화 사용’에 따라 우리대학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교명변경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3595, 2012.04.30.) 및

학칙 개정(2012.05.01.)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교명을 '서울예술대학'에서 '서울예술대학교'로 변경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2. (장기 글로벌현장실습자 및 장기 국내현장실습자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례) 제8조 제2항 제4호는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전적대학 졸업학점 인정 기준 적용례) 제8조 제6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의 제1항제11호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